#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봉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8048

발의연월일: 2022. 11. 2.

발 의 자:전봉민·강기윤·김도읍

김미애 · 김용판 · 김희곤

박성민 • 박수영 • 백종헌

서병수 · 이만희 · 이종성

이주환 • 이채익 • 이헌승

장제원 • 전주혜 • 정동만

정우택 • 조경태 • 조은희

황보승희 의원(2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이외의 자가 지역축제를 개최하는 등 행사주최자가 명확한 경우에는 주최자로 하여금 해당지역축제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발생한 이태원 사고에서처럼 대규모 축제에서 축제의 주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안전관리 조치가 미흡하여 대형사고 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하게 됨. 이러한 입법적 미비사항을 보완하고 자 다수의 참여가 예상되는 축제가 개최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상 기와 같이 축제의 주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도 경찰·소방과 협력하여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

아울러, 많은 사람들이 밀집되어 재난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에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군중들의 밀집정도에 대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특정한 지역 내의 사람들에게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지역대책본부장이 정보통신사업자 등으로부터 다수 군중의 밀집으로 재난안전사고가 우려되는 특정한 지역내에서 불특정다수에 대한 위치신호데이터를 수신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함으로써 예방적인 안전관리 조치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66조의11제2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74조의3제2항·제7항).

#### 법률 제 호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의11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 항) 전단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 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수의 참여가 예상되는 지역축제 또는 행사(이하 "지역축제등"이라 한다)의 주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도 경찰·소방과 협력하여 해당 지역축제등이 안전하게 진행될수 있도록 제1항을 준용하여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4조의3제2항 중 "개인위치정보의"를 "개인위치정보와 다수 군중의 밀집으로 재난안전사고가 우려되는 특정한 지역 내에서 불특정 다수 에 대한 위치신호데이터의"로 하고, 제7항 중 "개인위치정보의"를 "개 인위치정보와 위치신호데이터의"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6조11(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	제66조11(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
관리조치) ① (생 략)	관리조치) ①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수
	의 참여가 예상되는 지역축제
	또는 행사(이하 "지역축제등"이
	라 한다)의 주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도 경찰・소방
	과 협력하여 해당 지역축제등
	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제1항을 준용하여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u>②</u> · <u>③</u> (생 략)	$\underline{3} \cdot \underline{4}$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u>⑤</u> <u>제4항</u>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필	
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	
역축제 안전관리계획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	<u>.</u>
우 보완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	
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u>.</u>
⑤ 제1항부터 <u>제4항</u> 까지의 규	<u>⑥</u> <u>제5항</u>
정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	

계획의 내용, 수립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4조의3(정보 제공 요청 등)

- ① (생략)
- ②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지역 대책본부장은 재난피해자등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전기통신사업법」제2조제8호 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위치정보사업을 하는 자에게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 ⑥ (생 략)
- ① 제2항에 따른 <u>개인위치정보</u> 의 제공을 요청하는 방법 및 절차, 제3항에 따른 정보제공의 대상·범위 및 제4항에 따른 통지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u>	
제74조의3(정보 제공 요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개인위치정보와 다수군중	
의 밀집으로 재난안전사고가	
우려되는 특정한 지역 내에서	
불특정 다수에 대한 위치신호	
데이터의	
<u> </u>	
③ ~ ⑥ (현행과 같음)	
① <u>개인위치정보</u>	
와 위치신호데이터의	